화학플랜트 개·보수 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화학플랜트 설비의 개·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위험 작업별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플랜트 설비의 개·보수 공사 시 화기작업, 밀폐공간 작업, 정전작업이 필요한 작업, 설비 해체 및 설치작업, 설비 재가동 작업 등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개·보수"라 함은 노후화되거나 고장난 플랜트 설비의 성능이나 기능을 회복 시키기 위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비 또는 수리하는 공사를 말한다.
 - (나) "화기작업"이라 함은 용접, 용단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으로 또는 인화성·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.
 - (다) "밀폐공간"이라 함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·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〈별표18〉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며 <부록 1>을 참조한다.
 - (라) "정전작업"이라 함은 설비 또는 전로의 설치·해체·정비작업 시 감전 또는 기계·기구의 예기치 않은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.
 - (마) "재가동"이라 함은 플랜트 개·보수를 위해 설비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기계, 배관. 전기 등 작업이 완료된 후 설비의 가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.